**[붙임 11]**

**임시 유치장 감치자 체류 관련 규정**

**§ 1**

1.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은 하기 내용에 대해 즉시 안내받아야 한다.

1. 본 규정에 명시된 자연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은 임시 유치장 감치자 체류 규정이 명시된 감치 보고서 서명을 통해 해당 체류 규정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
2. 임시 유치장 내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장치에 대한 정보 (영상 관찰 및 기록 사용 포함)

2. 임시 유치장에는 8시간 이상 머물 수 없다.

3. 다음 단계 진행을 목적으로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은 유치장에 구류되지 않는다.

4. 폴란드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연인이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경우, 통역사를 통해 유치장 체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공된다.

4. 임시 유치장 감치자가 의식 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울 경우, 1조에 명시된 정보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 안내되어야 한다.

5. 임시 유치장 감치자의 의식 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 폴란드 형사소송법상 또는 기타 법률상 구류에 따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 안내되어야 한다. 감치자는 감치 보고서 서명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

**§ 2**

1.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은 자신의 성명, 아버지의 성명, 출생지, 거주지 또는 체류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1. § 2조 제2항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영치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개인 영치품 서류에 기록된다. 해당 서류는 임시 유치장 감치자와 영치품 보관 절차를 진행한 경찰관이 서명한다.

2.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이 영치품 서류에 기록되며, 자연인의 서명은 영치품 보관 절차 진행 시 참석한 다른 경찰관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3. (폐지)

4. § 2조 제2항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보관된 물건은 임시 유치장 감치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4**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에게는 하기와 같은 필수 정보가 안내된다.

1)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자연인을 감독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3) 사회적 공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임시 유치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5) 의도된 목적에 따라 유치장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6)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협, 임시 유치장 시설 파손 또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 5**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은 자신의 의복, 속옷 및 신발을 착용한다.

**§ 6**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에게는 하기와 같은 사항이 제공된다.

6)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음료를 마신다.

1) 의료 서비스 이용

2) 개인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시설 및 위생용품의 사용

3) 내무 담당 장관의 지휘를 받는 자연인의 사업장 및 운송 수단 내 담배 제품 사용에 관한 세부 조건 규정에 의거해, 흡연 행위가 경찰관의 임시 유치장 감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4)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동의를 받은 합의된 상황에서만 복약이 허용된다. 의사와의 합의에 따라 의사 또는 경찰관이 임시 유치장에 감치된 자연인에게 약을 지급한다.

5) 임시 유치장을 감독하는 경찰관을 통해 해당 유치장을 관리하는 경찰조직 단위의 장에게 요청 및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6)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 음용

**§ 7**

1. 임시 유치장에서 퇴소한 자연인에게는 영치품을 반환한다.

2. 보안 또는 행정 집행을 통해 압수된 영치품 및 영치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 (폐지)